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05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법령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금지되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구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4. ~ 5. 16., 7. ~ 7.) 결과, 특기
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투자자 이익 보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관련법령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편 제4장 제2절 제3관에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법 제10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 또는 광

고를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
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표시 또는 광고
3. 계약 체결 여부나 투자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
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표시 또는 광
고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
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제373조제1항제9호 중 “법 제101조제4항”을 “법 제101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20에 제1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의2.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

별표 22 제2호코목부터 베틀목까지를 각각 토목부터 셔목까지로 하고, 같
은 호에 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코. 법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법 제449조제1 항제34호의3	6,000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결격사유 확대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유사투자자문업자(유사투자자문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101조제9항제3호의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u>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u>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②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신 설>	<u>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u> ①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관련법령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u>제102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u> 법 제10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u>또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u> <u>1.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u> <u>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표시 또는 광고</u> <u>3. 계약 체결 여부나 투자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표시 또는 광고</u> <u>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u>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8. (생략) 9. 법 별표 1 제1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98조제1항 (법 제10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 24. (생략) ② ~ ⑥ (생략)	----- -----. 1. ~ 8. (현행과 같음) 9. ----- ----- -<u>법 제101조의2제1항</u>----- ----- ----- ----- -- 10. ~ 2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연 락 처	(02) 2100 - 2673